

2023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2023. 7.



[감 사 관]

2023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 감사 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종합건설본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3. 4. 3. 에서부터 2023. 4. 14.까지 10일간 2개반 10명이 참여하여 2019.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40건의 지적사항(본처분 지적 33건, 현지조치 지적 7건)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요구를 하였음.

□ 감사 결과

처분현황			처 분 요 구							기관 경고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계	본처분	현지 조치	계	시 정	주 의	개선 권고 등	계	회수	감액	
41	34	7	41	13	25	3	905,430	19,700	885,730	1

2023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	제목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기관 경고	
01	행정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관리 소홀	○○부	주의				
02	행정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소홀	○○부	주의				
03	계약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소홀	○○부	주의				
04	계약	관급자재(막구조물)구매관련 검토 소홀	○○부	주의				
05	계약	도로유지보수 관련 단가계약 개선	○○부	개선				
06	회계	회계업무 처리 소홀	○○부	주의				
07	계약	하자검사 소홀	○○부	주의				
08	계약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관리 소홀	○○부	주의				
09	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제한기준 검토 소홀	○○부	주의				
10	복무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부	시정	회수 1,819			
11	토목	건설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증지포함)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 소홀	○○부	주의			기관 경고	
12	토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미 준수	○○부	주의				
13	토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적용 검토 소홀	○○부	주의				
14	토목	도로점용(굴착)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 소홀	○○부	주의				
15	토목	품질시험실 운영 및 장비관리 소홀	○○부	시정 권고				
16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분야 감독자 미지정	○○부	시정				

연번	분야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기관 경고	
17	토 목	우수관로 존치에 따른 설계변경 관리감독 소홀	○○부	시정	감액 309,872			
18	토 목	단가 등 지정항목(PS) 계약의뢰 및 지장물이설비 지출 소홀	○○부	시정	감액 105,713 회수 7,477			
19	계 약	공사준공(기성)대가 지급 업무처리 소홀	○○부	주의				
20	토 목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발주청의 행정절차 업무처리 소홀	○○부	주의				
21	도시계획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소홀	○○부	권고				
22	안 전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계획 수립 소홀	○○부	주의				
23	안 전	PMMA 방음시설 교체계획 수립 소홀	○○부	시정				
24	안 전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미이행	○○부	주의				
25	토 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부	시정	감액 470,145			
26	건 축	건축설계용역 저작권 귀속 업무 소홀	○○부	시정				
27	도로관리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 협의 소홀	○○부	주의				
28	공원녹지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시행 소홀	○○부	시정	회수 5,797			
29	공원녹지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소홀	○○부	주의				
30	공원녹지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조정 감리 소홀	○○부	주의				
31	계 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이행 관리 소홀	○○부	주의				
32	공 업	공사관리관 업무 등 관리소홀	○○부	주의				
33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 소홀	○○부	시정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르면 건설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으로 신고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관련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에 따르면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 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 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 및 용역 등의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신청 건수 총136건 중 56건에 대해 불명확, 또는 담당업무가 아닌 사항을 포함하거나 사업기간을 상이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 대장에 별도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작성하였다.

[표1]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소속 직원의 경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 및 용역 등의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등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시고,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기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 3]에 이수해야 할 기본교육, 전문교육(최초교육, 계속교육, 전문교육)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등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공사 등 285건 중 54건의 경우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등의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설 현장에 배치하였다.

[표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향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등의 전문교육 등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 ○부

내 용

1. 기술사용료 요율 및 기술사용료 반영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에 따르면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에 따라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였고,

<별첨양식>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 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을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한 요율을 명확히 정하여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원가계산 시 이를 적용한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에서는 감사 대상기간(2020. 3월 이후, 이하 같다) 중 73건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여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표1]과 같이 15건에 대하여는 기술사용 협약서 상 기술사용료 요율을 0%로 정하거나, 원가계산서 상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았다.

[표 1] 기술사용료 요율 및 기술사용료 반영 소홀 현황: ‘생략’

2. 공법선정 관련 절차 이행 소홀

지방계약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1. 4. 1.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절 공법선정 절차 3. 공법선정 안내 공고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3절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정하고,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4.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사대상기간 중 선정한 73건의 신기술·특허공법 중 7건은 [표2]와 같이 공법선정 안내 사항을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가 아닌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였고, 1건은 당초 7인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중 1인이 불참하여 최소 위원수가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예비평가위원을 통한 최소 위원수를 충족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6인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건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별 평가점수(평가항목별 심사위원 점수)로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된 제안자만을 공개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평가결과의 공개에 소홀하였다.

[표2] 공법선정 관련 절차 이행 소홀 현황: '생략'

3.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미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해당 연도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표3]과 같이 불량맨홀정비 및 맨홀보수공에 환경신기술을 선정하여 적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적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표3] 환경신기술 활용실적 미제출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①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시 기술사용 요율을 명확히 정하시고, 원가계산 시 기술사용료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② 지방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한 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선정하여 반영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활용실적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막구조물) 구매 관련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20. 3월 이후) 중 2021년에 ‘문학경기장 개보수공사’와 2022년에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며 [표]와 같이 관급자재(PVF막구조물)를 우수조달물품(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관급자재(막구조물) 구매 계약 현황: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 이하 같다)의 장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6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조의3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0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 하여야 한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된 우수제품(우수조달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감사기간 현재(2023. 4. 1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되는 'PVF 막구조물(3023170102)'은 39개 업체 355개의 상품이고, 이 중 341개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으로, 14개는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조달청과 업체간 다수 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라는 사항과, 각 사업별로 ‘막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 추진을 위해 수립한 자료 등을 보았을 때 ‘막구조물’은 설계 반영 및 구매 추진 시기에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급자재인 ‘PVF막구조물(3023170102)’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총액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식과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구매를 추진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업체인 (주)□□□□□사무소에서 막구조 발주방식을 검토한 자료에는 우수조달물품(제3자 단가계약)과 총액입찰만 비교하여 우수조달물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검토된 사항만 있을 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해당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막구조물’이 등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사항은 없었고,

이러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발주부서인 건축부에서는 우수조달물품 구매를 위한 신기술·특허·자재 선정위원회를 거쳐 주식회사 □□이 납품하는 PVF 막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하였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PVF막구조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격과 계약 방법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물품의 구매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사항이 없는 상태로 특정 우수제품 지정번호(2020185)를 설계도서인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관급자재의 구매 시행과 관련한 구매계획 검토 보고 자료에서 설계 규격과 동일한 ‘PVF막구조물(1000×1000mm, 막교체용)’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사항을 기준으로 우수조달물품 1개와 다수공급자계약물품(검토서 상 ‘일반물품’) 30개를 비교하였으나,

우수조달물품의 단가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30개의 평균단가를 비교하여 ‘우수제품과 일반제품(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조달 단가 차이가 없어 품질인증된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을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별 해당 공사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2단계 경쟁과 관련한 가격 할인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어 관급자재 구매방법 결정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으며, 그 결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우수제품 지정 물품인 주식회사 더블앤이 납품하는 PVF막구조물을 구매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급자재가 구매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계약방식 및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도로유지보수 관련 단가계약 개선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에서는 20m 초과 도로에 대한 노후도로 관리 및 도로정비의 적기 추진으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매년 1월 도로유지보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서의 내용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 ○○○○부 3개팀에서 인천광역시 내 8개 구(區)를 남부권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과 북부권역(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나누어 도로보수 및 부대공사 등을 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계획(사업량) 등을 변동(재조정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의 수립 시기는 매년 1월 중순 이후임에 따라 설계 등을 거쳐 도로보수 등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는 시기는 3월부터 계획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20. 3월 이후) 중 도로보수 관련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매년 3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연초에 발생하는 긴급한 도로보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중 발생하는 도로 파손 등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을 검토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간의 도로파손에 대한 직영보수(상온아스콘 보수)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2022년부터는 전문업체 포장방식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한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다음 연도 도로유지보수 발주 시기를 미리 검토하여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선] 연중 발생하는 도로파손에 대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유지보수 관련 단가계약 추진 현황(2020. 3. ~ 2022. 12.) '생략'

[일련번호 06]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부, ○○○○부

내 용

1.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의 감사대상 기간(2020. 5월~2022. 12월, 이하 같다) 중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종합건설본부 연도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생략’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 지급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중 나. 축의·부의금품 3)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나)에 따르면 “가)”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집행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사 대상기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축의·부의금 집행시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사무처장 등에게 축의·부의금을 집행하였다.

[표2] 경조사비 집행대상 유관기관 적용 소홀 ‘생략’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 회계관리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및 과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용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프린터 토너 구입, 사물함 구입, 민방위복 구입, 정수기 교체 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이 적정한 내용들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시의회 참석자에 대한 식사 비용, 비상근무 현장 직원 간담회, 사무실 확장 기념 화분 구입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해야 하는 내용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통계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적절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표3] 부서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현황 ‘생략’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지방 회계관리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고, 매 분기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중 종합건설본부의 각 부서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확인한 결과, ○○부에서는 2020. 1~ 10월, 건축부에서는 2020. 4~12월,

○○○○부에서는 2020. 7~ 2021. 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신속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 정산 미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 4. 17.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응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 추진」 및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22. 4. 17. 인천광역시(○○담당관 및 ○○담당관)에서는 해당지침의 시행 등 협조를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상, 하반기 공통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실시하였다.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1. 자치단체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지급절차를 ① 지출품의(집행목적·예산금액·장소 등에 대한 내부방침) → ② 대금지급 → ③ 정산(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으로 정하며,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사무 종료(집행목적의 달성)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개산급 정산서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개산급 지급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개산급으로 선결제한 경우, 지급절차에 맞게 집행목적 달성(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개산급 정산서를 회계관계직원

에게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중 ○부장 및 ○○부장, ○○○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표4]와 같이 총 2,912천원(2020년 4월 6개 업체에 2,155천 원, 2021년도 6월 및 9월에 757천 원)을 선결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산하지 않았다.

[표 4] 업무추진비 선결제 후 미정산 현황 ‘생략’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발급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여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급량비 집행 소홀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 회계관리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호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2]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급식 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 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3조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 [별표4]에 따르면 특근매식비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내 종합건설본부 각 부서의 급량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5]와 같이 급식비 집행내역의 세부사항을 결재문서에 첨부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급량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전년도 비상근무에 따라 발생한 급량비를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하거나 급량비 지급시 현금영수증 사용 후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표5] 급량비 집행 소홀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회계 업무 처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 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부, ○○○○부

내 용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20. 3월~2022. 12월, 이하 같다) 중 [표1]과 같이 총 1,13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연도별 계약체결 현황 “생략”

1.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 지정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용역 및 물품의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961건(공사 686건, 용역 9건, 물품 266건)의 계약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213건(공사 137건, 용역 5건, 물품 71건)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지 않음으로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정을 소홀히 하였다.

2. 정기 하자검사 실시 소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3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 완료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간 중 정기하자검사 실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종합건설본부 ○○부(○○팀)에서는 2020. 3월~2022. 3월까지 매년 2회(상, 하반기)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계약 목적물 중 공사계약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해당 사업 담당부서(팀)에 요청하였고, 2022. 10월에는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 실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업담당부서(팀)에서는 요청받은 하자검사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고, ○○부 ○○팀에서는 사업담당부서(팀)에서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정기 하자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기간 중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503건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 하자검사의 실시 및 실시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정기하자검사 실시 현황 “생략”

3. 공사계약 최종검사 실시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각 호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계약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종검사는 계약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담 관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종합건설본부 ○○부 ○○팀에서는 감사 대상기간 중 매월 최종검사 시기가 도래한 공사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공사분야에 대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부서(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담당부서(팀)에서는 최종검사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거나 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목적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부 ○○팀에서는 사업담당부서(팀)의 최종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최종검사가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사일 현재 감사대상기간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 550건에 대한 최종검사 실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표3]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 14일 이전 또는 만료 후 최종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종검사의 실시 및 실시사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다.

[표3] 공사계약 최종검사 실시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및 하자검사 업무처리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보책임 존속기간 시작일 지정 소홀 현황 “생략”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지방계약예규”이라 한다)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방계약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부서 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고, 공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부서 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용역의 착공(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건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7조(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지방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같은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2항에서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제1항에서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1항에서 지방회계법 제46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계약부서 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등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감독부서로부터 공사·용역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잔여일수 및 최종준공일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 변경 등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연장된 계약보증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재발행받아야 하고, 선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선금보증서를 연장하여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착공(재착수)일에는 재착공계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 등을 제출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관련 문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에 따라 민원문서로 구분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비전자 문서로 접수(접수인 및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기재)한 이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감사대상기간 내 종합건설본부에서 체결한 공사·용역 계약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절차 이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 사업 담당부서(○○○○부)에서 계약을 의뢰한 ‘2020년 남동구 □□대로 □□□ □□공사’ 및 ‘2020년 남동구 □□대로 □□□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계약담당 부서(○○부)의 계약 체결(2020. 11. 17./ 준공예정일 2021. 2. 14.)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 12. 3. 사업 담당부서는 동절기 온도하강에 따른 공사중지를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같은 날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서를 시행하였다. 이후 2021. 5. 11. 사업 담당부서에서 해당 공사 및 용역의 재개 알림을 통보하면서 조치를 요청했으나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및 용역의 재개를 알리지 않았으며, 계약기간 변경 등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표1] 변경계약 없이 준공금 지급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요 “생략”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도로포장공사 계약의 경우, 2021. 7. 6. 사업 담당부서에서 설계변경(정산)을 검토한 후 2021. 7. 7.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2021. 7. 8. 사업 담당부서의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기한을 변경한 준공계를 경유(확인)받아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준공계를 받은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준공서류를 제출하였는지, 계약서와 일치하는 과업을 완수하였는지, 해당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공문서로 접수한 이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용역기간을 변경하여 사업부서에 준공계 접수 통보 및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1. 7. 14. 계약담당 부서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준공검사 조서의 준공일자는 2021. 7. 9.이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완수금 청구서 및 완수금 청구 응낙서의 완수일자는 2021. 2. 14.로 서로 다른 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관리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계약 체결 이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의 현황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제한기준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 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같은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민감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 제2항에서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채용서류 접수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합격자를 고지할 경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모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자동차전용도로(○○○○도로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표]와 같은 기준으로 채용하였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생략”

그런데 채용서류를 제출받을 때 가능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폐기 등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2021년과 2023년 채용 시에는 방문 접수만 허용하였다.

합격자 고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모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며 개별적 방법으로 알릴 경우에는 합격자는 전화, 불합격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문자전송이나 전자우편 등 기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통지만 하는 것으로 공고하여 불합격자에 대한 고지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 제한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2022년 만 18세 이상, 2023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 제한을 확인한 결과 송도□□□□(수전용량 5,200kw)와 □□지하차도(수전용량 2500kw) 사무실에서 근무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서 2021년도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경력 2년 이상자로 공고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소지자로서 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경력 4년 이상자로 각각 상이한 자격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법령 등에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하거나 회보할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법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고하였고, 아동 관련기관

이나 청소년상담센터 등 일부 기관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자를 응시제한자로 공고하는 등 불합리하게 제한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르면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7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가 보상비는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정직 일수와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의 감사대상 기간(2020.5월~2022.12월) 중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5일 이상의 병가 사용자의 경우 병가기간을 1개월로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정직 일수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연 6일을 초과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 후 연가 일수를 재산정한 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연가 일수의 재산정 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총 1,819,32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연도별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지급액(1,819,32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회수처리 하시고, 직원의 병가 사용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인천광역시

기관경고·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계약기간의 연장(중지포함)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각 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제1,2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시공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 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 ○○부 및 ○○부에서는 시공사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요구[표1], 공사중지[표2]시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협의 및 계약금 조정 등)를 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계약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사전 조치하여 향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건설사업 공사 계약기간 연장 현황 “생략”

[표2] 건설사업 공사중지 현황 “생략”

3. 관계기관 의견

(○○부)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중지시에는 계약금액의 조정(간접비) 협의와 필요 조치 등을 통해 계약금 조정금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또한 현재 중지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하고 직원 업무 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 사업 추진을 위한 재배정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약상대자 (시공사)로부터 간접비 반영에 대한 요구 사실이 없었으며, 비용 미산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 하에 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발주청은 관계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기간 내에 공사 연장과 중지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금액의 조정(간접비)협의와 필요 조치등을 통해 계약금 조정금액을 확정(설계변경)하고 이를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기간내 불가피하게 협의가 불가능할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및 조정한 근거자료를 문서화 관리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에도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기관경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기연장과 중단사유 발생시점에 협의완료 및 공사기간내 설계변경 조치하고 향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서 ○○부,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 ○○부, ○○부에서는 [표1]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착수)하여 공사관리관 업무 및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완료포함)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용역 추진현황 (○○부, ○○부) “생략”

1.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처리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 감독 및 업무범위)제1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공기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7일-14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수단계 시 설계도서 등이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로부터 설계도서 검토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보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나

종합건설본부 ○○부, ○○부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표2]와 같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포함)에게 공사 착수 단계 시 설계도서 검토 미 이행에 대한 지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포함)의 검토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설계변경 등 반영)를 하지 않았다.

[표2]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여부 (○○부, ○○부) “생략”

2. 설계변경(실정보고) 절차 이행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 접수 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는[별첨1]과 같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현장인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같은 지침 제67조 제5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 작성 어려울때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

또한 제5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한다.

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부, ○○부에서는 □□□ - □□□ □□도로건설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포함)으로부터 2021. 9. 6. 부터 아래 [표3]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승인 요청을 접수 받고 검토한 후 승인 처리한 바 있다.

[표3] 실정보고 접수 및 처리현황 (□□부 , □□부) “생략”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부 및 ○○부(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는 실정보고 처리에 있어 [표3]과 같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 각 항에 따른 ①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 검토 ②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활용 소홀 ③주요 구조 및 공중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 하여 조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사 착수단계에서 설계도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실정보고)을 추진토록 조치 하여 주기 바랍니다.

② 또한 건설공사 계약부터 유지관리까지 업무관리지침서를 ○○부 및 ○○부 자체 실정에 맞게 발행·배포하고 향후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별첨 1】 업무 흐름도 “생략”

[일련번호 1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적용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제1조에 따르면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건축설계업무)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조(설계업무) 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설계업무("건축설계")는 아래와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② 중간설계(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③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 ○○부에서는 「공공

발주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용역준공 및 추진중에 있다.

[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 “생략”

종합건설본부 ○○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계업무 (“건축설계”)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행 과업지시서에 건축사의 업무범위(건축설계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획설계는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하며, 중간설계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나

그러나, 용역감독 수행중에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공공사업 발주를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을 준수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계획, 발주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점용(굴착) 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과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와 면적 ③점용의 기간 ④점용물의 구조 ⑤공사의 방법 ⑥공사의 시기 ⑦도로의 복구방법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도로폭과 관계 없이 도로의 도로점용(굴착, 공작물 포함) 허가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 업무의 권한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구 등 8개 구에서는 [표]와 같이 도로폭 20m를 초과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를 2021년 총 573건, 2022년 총 534건 처리하였다.

[표] 도로점용허가(굴착심의 등) 현황 “생략”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의 도로점용(굴착, 공작물 포함) 허가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준공 사항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표]와 같이 심의(2개구만 심의위원으로 지정)에 참여하게 하여 원활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조치로 인하여 도로폭 20m 초과도로 굴착부분 도로파손 민원 발생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굴착당사자 확인이 어렵고 현장 확인 후 구청으로 이송됨에 따라 민원처리 지연과 도로굴착복구 구간에 대하여 준공 및 하자 사항이 종합건설본부로 미통보됨에 따라 하자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구간의 도로파손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복구하는 등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표]와 같이 도로폭 20m 초과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 미 참여(6개 구 위원 미지정) 및 도로굴착시 허가사항에 대해 동구 등 4개 구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미통보 하였고, 도로폭 20m 초과도로에 대한 굴착준공 및 하자 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청 등 8개 구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미통보하였으며

본 사무위임 부서(인천광역시 ○○과)에서는 허가 및 준공 미통보한 사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않았고 도로관리기관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등 도로점용(굴착)허가와 도로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주의] 도로점용(굴착)허가 구청장 위임업무 지도감독을 시행과 업무개선 방안은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20m이상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한 도로유지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권고

제 목 품질시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진흥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를 말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각 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로 등록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생략”

시험장비의 관리에 대해 「물품관리법」 제35조 따르면 그 소관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방법등이 제시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불용의 결정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 ○○○○부에서는 적정한 품질관리 강화, 부실 시공방지, 토목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위해 품질시험실을 [표2]와 같이 운영중에 있다.

[표2] 품질시험실 운영 현황 “생략”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별표5]에는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표2]과 같이 공무원(건설재료 시험기사 1명, 보조 2명)으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사무실·시험실 면적도 등록기준이 150㎡이상 임에도 145㎡를 운영중에 있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요건에 미달되게 품질시험실을 운영중에 있다.

시험실 장비 관리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내용 연수가 상당기간 지났거나

대체 구매한 이후 기존 시험장비에 대해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용이나 처분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다.

[표3] 시험실 장비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이나 처분등을 조치하기 바랍니다.

[권고] 품질시험실 운영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부합하고, 중·단기적으로 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분야 감독자 미지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7조에 따르면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 ○○부에서는 □□□□□ -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해 [표]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표] 용역 추진현황 “생략”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용역 착수시 분야별(토목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분야로 각각 구분)로 용역 감독자(이하 “감독자”한다)를 지정하여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용역 설계내역서에는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용지도 작성과 토지 및 권리조서 작성 비용 등에 대하여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상에 용지도 작성, 가옥조사,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을 조사하고 물건조서를 제출하도록하고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수행중인 □□□□□ - □□□□□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사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상 사업참여자 구성도를 보면 도로 및 공항분야, 구조분야, 토질 및 지질분야, 교통분야, 측량분야, 도시계획분야, 토질조사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보상분야(토지 및 권리조서, 물건조서 등)에 대한 참여자는 미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용역수행단계에서 보상 물건조서 조사와 작성 시 현지와 적합여부 등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상분야 감독자를 지정(보상담당자)하여 보상업무가 신속

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는 용역도급사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상분야(토지 및 권리조서, 물건조서 등)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각종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수행 단계에서부터 보상분야 용역 감독자를 지정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우수관로 준치에 따른 설계변경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도로간 도로확장공사는 검단일반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도로 간선망 구축사업으로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현황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하고 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도로간 확장공사는 기존 도로를 편측(우측)으로 확장(폭 20m→폭 40m)하는 공사로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로의 유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감액)하여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도로간 도로확장 공사 실시설계에는 기존 우수 관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관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표2]와 같이 기존 관로가 우수 용량 처리를 만족하는 관경을 확보하였고,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기존 관로를 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2] 우수관로 설계 현황 “생략”

따라서, 종합건설본부는 건설사업관리인으로부터 실정 보고를 적기에 제출 받아 설계변경(감액 309,872천원)등의 조치를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감액 조치하지 않는 등 발주청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수량 및 공사비 변경 검토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건설사업기술인으로부터 실정보고를 접수받아 조속히 설계변경(감액조치 309,872천원)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단가 등 지정항목(PS) 계약의뢰 및 지장물 이설비 지출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사 내역서의 PS(잠정금액)항목 금액과 계약금액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PS(잠정금액) 설계 및 계약금액 현황 “생략”

1. 공사 계약 의뢰시 PS(잠정금액)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공사발주 시 사업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 가격 작성 요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한다.

공사 내역서상의 PS(Provisional Sum)항목은 공사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일식(一式)으로 물량내역서(BOQ)에 명시한 항목 또는 금액으로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잠정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각각의 잠정 금액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달청에서는 PS와 관련하여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이라 부르고 있으며 PS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공종으로 인하여 공사원가계산서상 PS(잠정금액)항목의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지장물 이설비, 지적확정 측량비, 품질관리시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확정된 총사업비에서 계약의뢰 시에는 PS(잠정금액)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9946호,2019.12.18.)」 제7조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제3항에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 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 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 내용에서도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의뢰 시 PS항목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의뢰하여 낙찰자는 잠정금액(PS)에 낙찰율이 적용 되어 당초 설계금액과 차액(총금액

105,713,166원)이 발생하였다.

2. 지장물 이설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출 검토 소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국세청훈령) 4-0-1 제 1항에 따르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물건(지장전주 등) 등을 소유자에게 이전토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이하 “이전비”이라 한다) 보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이전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역을 확인 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공사 구간에 저축되는 한전주 이설 금액을 지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설금액 지출액[표2]에 부가가치세를(7,477,114원) 포함하여 지출하였다.

[표2] 한전주 이설 금액 지출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PS항목에 대한 낙찰적용 금액을 감액(105,713,166원)하시고, 한전주 이설비(부가가치세)를 회수(7,477,114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② 종합건설본부는 PS항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가계산서에 명기하고 계약의뢰시 PS항목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의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인천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준공(기성)대가 지급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의 현황은 [표]와 같다.

[표] 하수급인 계약 현황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 연결도로(대□-□□호선) 건설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들의 대가 지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회차 기성 신청 시에는 전회의 대금 수령 내역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 하도급인 관련업자들의 대금이 미 지급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발주청의 행정절차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한 바 있다.

[표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황 “생략”

1. 기본설계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미 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71조(기본설계)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하며, 제3항에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는 건설공사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다.

2. 공사착수 단계 지도 감독 및 업무처리 소홀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표2]와 같이 발주하여 공사관리관 업무 및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2]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현황 “생략”

□□□□도로개설공사 책임건설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에 따라 2023. 1. 12. 공사착수단계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결과를 본부에 제출하였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공사 착수 단계에서 검토한 총 지적건수는 420건이며, 이중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이 55건, 설계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36건이 있어 발주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지시를 하여 검토 및 실정보고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제5항에 발주청은 시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전력 및 통신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 12 .18. □□□□공사는 □□□□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전력선 관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 공문으로 협의요청 하였고, 종합건설본부는 2020. 12. 22.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에 검토 지시를 하여 회신 된 결과는 ○○동(○○시티)의 전력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로 하부 저축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본 도로 일부 시설(횡배수관 및 배수암거)과의 저축이 발생 될 수 있어 공사 전 재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본부는 2021. 10. 29.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전력구 설치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유관기관 회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착수단계 시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인천광역시

권 고

제 목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에서는 서구 마전동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2021. 4. 12.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2022. 5. 11. 서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0조(지적의 적정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과소토지의 기준)에 따라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마전동 △△-1, 2, 3번지 토지는 2001. 2. 20.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당초 △△-1번지에서 △△-1, 2, 3, 4번지로 토지가 분할되었고 △△-4번지는 2002. 9. 3. ●●●●●●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마전동 △△△△-3번지로 환지처분 되었으며, 마전동 △△-1, 2, 3번지는 2019. 1. 9. [표2]와 같이 ●●● 외 7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토지이용을 할 수 없는 면적으로 분할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표2] 토지 이동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권고] ○○청과 협의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역 외 잔여지(○○㎡)를 보상하고 기타 사업 구역도 전수조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일련번호 2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시설물안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관리계획에는 ①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부에서 2020. 3월 이후 수립한 연도별 시설물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2021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하면서 ③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2022년도, 2023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①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③시설물의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시설물관리계획 포함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물 안전법」을 준수하여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시설물의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PMMA 방음시설 교체계획 수립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22.12.29.)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사고('23.1.3.)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발표('23. 2. 2.)하고 도로법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에 따라 특별·광역시·도에 “PMMA(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을 통보('23. 2. 8.)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①화재에 취약한 PMMA 방음터널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023.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2024. 2월까지 교체 ②PMMA 방음터널 전체 교체 전까지 소화설비, CCTV 등 방재설비 설치 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일부구간 철거 등을 통해 화재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조속히 시행 ③PMMA소재 방음벽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하여 2023. 3월까지 계획 수립 및 2024. 2월까지 철거·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국토교통부 “PMMA 방음터널 교체 명령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 통보”에 따라 2023. 3. 9. 「방음시설 화재안전 대책 시행에 따른 교량구간 PMMA 방음터널(방음벽) 교체계획(이하 “방음터널(방음벽) 교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부에서 수립한 방음터널(방음벽) 교체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석남제2고가교 방음벽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철거시기 확인 없이 [표]와 같이 “□□□□ □□□ 도로개량공사로 2025년 철거 예정”을 사유로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고가교 철거 예정시기를 확인한 결과, 2027년 이후 철거예정 으로 시설물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해 철거시기를 고려한 방음벽 정비(교체)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방음터널(방음벽) 교체계획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화재 확산 위험성이 있는 PMMA소재 방음벽(□□□□고가교)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철거·교체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제1, 2, 3종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를 [표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등급 A,B,C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D,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표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생략”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 2020. 3월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 등 7개 제1종 B등급 시설물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 내 정밀안전진단(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2021. 3월 시행품의를 하였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0일임에 따라 용역 시행품의 당시에 2021년 상반기 중 용역 준공이 어려운사안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부에서는 2021. 3월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시행품의 당시에 용역기간(120일)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과는 별개로 □□□□□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2] 송도국제교 등 7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추진경과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현황 “생략”

[일련번호 25]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및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품질관리비 입찰공고 미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 2020. 3월 이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계약)금액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 건설사업에 대하여 품질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고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사업의 부실한 품질관리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호선) 확장사업’ 등 2건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

[표1] 품질관리비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미반영 현황 “생략”

2.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적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는 [붙임]과 같이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인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활동비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는 시험관리인 인건비를 제외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를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부에서 2020. 3월 이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험관리인

인건비 제외 등 품질관리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 사업에 대하여 시험관리인에 대한 1)인건비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를 과다 계상 하였다.

그리고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는 고급기술인 1인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총 5건 사업에 대하여 품질관리활동비 470,145천 원을 도급내역에 과다 반영하였다.

[표 2] 품질관리활동비 과다반영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반영분에 대하여 감액(470,145천 원) 설계변경 하기 바랍니다.

②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준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 “생략”

[일련번호 26]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설계용역 저작권 귀속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건축저작물”로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설계용역 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계약서 계약내용에 “건축저작물(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의 인천광역시(발주처)로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 계약내용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포함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건립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저작권을 인천광역시(발주처)에 귀속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제한차량 운행허가시 도로관리청 협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조(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제1항 제2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에서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 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10,663대의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도로에서의 운행허가 업무 처리시 [표]와 같이 328대의 차량에 대하여 모든 운행경로상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

[표]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시 모든 경로 도로관리청 미협의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향후에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시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는 서구 불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녹음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표1]과 같이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현황 “생략”

1.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 제138조(시공 확인)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등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계약상대자(□□□□(주))가 제출한 제1회 실정보고서(건설 제21-0308-1(2021.3.8.))와 관련하여 토공 조성 높이 변경(경사도 완화) 및 확정 측량에 의한 경계부 식재(스트로브잣나무 179주) 불가능 등에 대하여 내부검토(○○○부-△△△△(2121.△.△.))하여 실정보고 승인(○○○부-△△△△(2121.△.△.))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변경(○○○부-△△△△(2121.△.△.) 하였다.

그런데 실정보고 내용 중 불로2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경관녹지의 면적이 [표2]와 같이 319.9㎡ 감소하였으나, 설계변경 시 이를 누락한 채 잔디식재 면적을 산정하여 [표3]과 같이 준공금액 기준 2,817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불로2지구 녹지 결정(변경) 조서 “생략”

[표3] 잔디식재 면적 설계변경 사항 “생략”

또한, 흙콘크리트포장(관급자관급) 시공과 관련하여 목표 강도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서에 반영된 측면 합판거푸집(0.2㎡/m)을 계약상대자가 합판만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지시하거나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 5. 11. 공사를 준공검사 처리하여 [표4]와 같이 준공금액 기준 2,98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4] 흙콘크리트포장 합판거푸집 사항 “생략”

2. 공사기간 산정 업무 소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19.1.1.)」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 여건, 자연 조건, 법정 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
하여 공사기간이 부당하게 삭감 또는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주청은 산정기준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에 따라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산정기준 제5조(공사기간 산출)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7조(비작업일수)
내지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에 따르면 비작업일수란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법정공휴일수와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정기준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제7호에
따라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시공조건을 입
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
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
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정기준 제16조(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산정기준 제17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제1항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제1항다호를 준용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상대자((주)□□)가 위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예정공정표만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고,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입찰서류에 공사기간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이로인해 공사 계약상대자(□□□□(주))가 공사착공(2020.10.14.) 후 1)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표토층 동결에 따른 수목이식 불가, 2)흙포장 콘크리트 시공 관련 응결과 결로현상 발생 우려, 3)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인한 작업자의 낙상·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요청(○○동 제201223-2020.12.23.) 하도록 하는 등 발주청의 비합리적 공사기간 산정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불로2지구 경관녹지 조성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잔디식재 면적 과다 산출 및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된 합판거푸집으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5,797천 원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는 서구 불로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정서 및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공간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현황 “생략”

1. 환경관리비(EGI웬스) 산출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하여야 하며, 이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제2장제5절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 중 경비의 세비목은 운반비, 가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이라 한다)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침사 및 응집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고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비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 발주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직접공사비 부분의 산출은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에 따른 ○○청의 보완 요청 및 시공사의 실정보고(2회차)에 의한 공

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방음시설(EGI웬스, H3.0m)을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하여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아 [표2]와 같이 계약금액 기준 1,408천 원(제경비 포함)의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었다.

[표 2]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방음시설 원가계산 산출 “생략”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이행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하수도·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포함)하며 다만, 변경 내용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는 불로지구 6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진입부 경사를 이유로 원형의자와 등의자 설치 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의자를 파고라 하부 등으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하지만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긴 의자 등을 이동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는 규정과 다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불로 지구 6호 어린이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①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는 경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과 다르게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0]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조정감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부(이하 “종합건설본부”이라 한다)는 남동구 도림동 △△△-△번지 일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표1]과 같이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 감리용역 현황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 하도록 해야 하며,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

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 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공정표의 검토,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2조(대지의 조경)제1항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 조경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는 “□□□□ 건립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시행계획서의 ‘용역의 범위 및 과업지시서 I. 3. 다. 과업의 범위’에는 건축·토목·기계·조경 분야(전기, 통신, 소방감리용역 분리발주)로 구분하였으나 [표2]와 같이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02.배치계획표’ 및 ‘과업지시서 3. 마.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공사

감리자(건축사)의 책임하에 건축사보(건축분야)가 조경분야 감리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조경분야의 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

[표2] 감리용역 과업 범위 및 감리원 배치 사항 “생략”

그리고 총 공사비(12,683백만원) 중 조경공사비(537백만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3]과 같이 4%에 불과하지만 공사 내용에 식재기반조성,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포장, 배수 공사 등이 반영되어 있는 등 수목식재·관리 공정 수행을 위한 수목의 생육특성 전문지식, 조경식재기반 조성 적정성 검토, 굴취 및 T/R을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고유수형 유지), 식재 후 시기적절한 사후관리와 병충해방제로 하자발생 최소화 등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전문가를 통한 공사현장의 감리가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감리용역을 시행하였다.

[표3] 공사종류별 공사비 구분 “생략”

이로 인하여 최근의 기후위기 및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시설 조경공간의 사회적 중요성의 인식 변화와 달리 비전문가의 조경분야 감리 병행으로 조경 설계·시공 이해 부족으로 인한 설계의도 구현 미흡, 조경공간의 질적 저하, 임의적 시공 및 조경공사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향후 공공건축공사 감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조경공사의 품질과 현장 관리 등의 확보를 위하여 조경공사 기간 내에는 조경분야 전문가를 통한 현장감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인천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이행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 2022. 12. 23.)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하여 2012. 4. 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을 통보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공 시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개설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받아 월 단위로 계약상대자가 전월 지급한 노무비 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외신청을 받아 제외사유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2020~2022년 전기·통신·소방분야로 계약한 공사 중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 25건 중 [붙임]와 같이 11건의 계약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공 시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대상기간 중 체결된 [붙임]과 같이 14건의 계약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청구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현황(전기·통신·소방분야) “생략”

[일련번호 3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관리관 업무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한다.) 제2조(정의),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0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제1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9항에 따라 공사관리관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2)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에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제1항,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쳐 정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지침」 제102조(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제6항에 따라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시행한 건설공사 26건 중 1건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25개소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도 업무수행 사항을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대□-□호선)확장공사 외 1건은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지 않았고, 20건에 대하여는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서식을 통해 작성하여야 하나,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관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행정절차와 업무수행사항 기록 유지 및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주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미준수 현황 “생략”

[일련번호 33]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종합건설본부 ○○○○부에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표1]과 같이 83대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현황 “생략”

1. 판단기준(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부 ○○○○팀에서는 2022.11월 □□□□·

□□□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CCTV 총 6대 철거하고 미설치 하였으나 변경사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3. 3월 운영관리 지침 변경 시에는 운영하지 않은 6대의 CCTV가 포함되어 공개되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부 ○○○○○팀에서 관리중인 □□지하차도 및 □□지하차도에 2021년 2개소, 2022년 1개소 추가 설치한 CCTV가 누락되었으며, 감사기간(2023. 3. 31.) 중 누락된 현황을 추가하여 공개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미반영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정]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상 변경된 사항을 공개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민원상담실 및 직원휴게실 조성사업	총 무 부
수범사례 2	업무용 택시제도 도입	총 무 부
수범사례 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총 무 부
수범사례 4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 정상화 기여	토 목 부
수범사례 5	우회고가 정비사업 적극추진	토 목 부
수범사례 6	공사 시 교통혼잡 적극 개선	토 목 부
수범사례 7	발주청 기술검토팀 운영	토 목 부
수범사례 8	문학야구장 그라운드 정비공사	건 축 부
수범사례 9	전기공사 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	건 축 부
수범사례 10	2022년 종합건설본부 설해대책 추진	도 로 관 리 부
수범사례 11	공용차량의 철저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도 로 관 리 부

1

민원상담실 및 직원휴게실 조성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본부청사 구내식당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한 공간을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 사업개요

- 위 치 : 본부 지하 2층
- 사 업 비 : 13,013천원
- 사업기간 : 2020. 4.17.~2020. 4.22.
- 내 용 : 민원상담실 및 직원휴게실 조성을 위한 공사(도배, 필름 등)

□ 사업성과 및 운영

- 민원인 및 외부 방문객의 상담을 위한 민원 상담실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함.
- 민원인 방문시 사무실이나 복도에 마련된 협소한 공간에서 응대해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만족
-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도서 비치를 통해 마음까지 치유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기대효과

- 내방 민원인과 대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직원 휴식공간 부족 해소 및 직원 상호간 화합분위기 조성
-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 총무부 총무팀 (☎440-5136)

□ 추진배경

- 공무원 업무수행 출장 시 관용차량 배차 어려움(수량 한정)
- 운전면허 미소지자 및 임신부 등 출장 편의 제공
-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구현
-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에 따라 본부는 자체운영 기관에 해당됨

□ 운영 계획(안)

-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 이용대상 : 본부 전 직원
- 이용시기 : 2023. 4.17. ~ 지속적
- 소요예산 : 약 3,000천원 범위내(부서당 연평균 1,000천원)
- 이용원칙
 -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 (09:00~18:00)
 - 근무지 내에서만 이용 가능 (강화·옹진 제외한 인천시 전역)
 - 본부 직원만 이용 가능 (공무직 등 포함)
- 이용절차



□ 기대효과

- 직원 출장 시 신속·편리한 업무 지원 ⇒ 행정능률 향상
- 운전면허 미소지자, 임신부 등 이용 ⇒ 업무 편의 증진
- 택시이용으로 업계 간접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 공용차량 구입·유지관리비 절감⇒ 행정효율성 제고

□ 담당부서 : 총무부 총무팀 (☎440-5132)

□ 추진목표

-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지역 건설자재, 인력, 장비 사용 촉진을 통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도모
- 원도급률 : 49% 이상, 하도급·지역인력·자재·장비사용률 : 70% 이상

□ 관련근거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추진사항

① 공사별 지역업체 참여실적 분석 : 월 1회

- 대상 : 종합 및 전문공사 중 1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 기준 : 공사별(원·하도급, 인력·자재·장비) 참여실적을 매월말 기준 작성
- 실적부진 공사 선정 및 부진사유를 확인하고 있음.
→ 시 본청(건설심사과)은 년 2회(상·하반기)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취합, 확인

②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

- 지역제한 입찰공고 추진(2023년도) : 15건 / 2,259백만원
 - 대상 : 종합 100억원 미만(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10억원)
 - 방법 : 공사 입찰 공고시 지역제한을 명시하여 경쟁 입찰 실시

(단위: 건수, 백만원)

구분	2022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172	44,080	152	40,340	108	25,252	134	62,604

-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추진(2023년도) : - 건 / - 백만원
 - 대상 : 종합 100억원 이상(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10억원)
 - 방법 : 지역업체가 공사금액의 49%이상 의무적으로 도급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시공참여 확대 및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단위: 건수,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12	279,261	2	18,040	8	156,242	12	91,536

③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간담 및 상생협약 체결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인력·자재·장비 70%이상 사용 권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 협회 건의사항 의견청취 및 논의 등

※ (2022년) : 2건

- 승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515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주), 케이와이종합건설(주), 해일이엔씨(주)]
-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496억 원)
[남양건설(주), 현해건설(주)]

□ 추진실적

①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 (2023. 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				타지역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수주율		업체수	금액 (특허)
					업체수대비	금액대비		
원도급	76	582,145	49	315,730	64.5%	54.2%	27	266,415
하도급	71	154,547	36	79,393	50.7%	72.9%	35	75,154 (45,676)

- 하도급(금액)수주율 : 지역업체 / (전체 하도급-타지역 특허)

※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종합공사 100억원(전문공사 10억원)이상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추진(지역업체가 공사금액의 49%이상 의무 참여)과 간담회 및 상생협약 체결 추진.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실적(연도별)

(단위: 백만원)

구분	전 체		지역업체				타지역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수주율		업체수	금액 (특허)
					업체수대비	금액대비		
2022	102	175,125	54	90,276	52.9%	70.4%	48	84,849 (46,946)
2021	53	54,989	37	37,246	69.8%	69.48%	16	17,743 (1,341)
2020	81	59,968	59	33,564	72.8%	60.8%	22	26,404 (4,748)
2019	103	118,153	44	43,595	42.7%	39.1%	59	74,558 (6,628)

② 지역인력 및 지역자재.장비 활용실적

(2023. 2월말 기준)

구 분	인력(명)	자재(백만원)	장비(대)	비고
전체	81,785	27,602	26,016	
인천	53,092	16,788	20,654	
비율	64.9%	60.8%	79.4%	

* 작성기준 : 1천만원 이상 작성

▶ 지역건설업체 인력.자재.장비 수주실적(연도별)

구 분	인력(명)			자재(백만원)			장비(대)		
	전체	인천	비율	전체	인천	비율	전체	인천	비율
2022	104,195	74,955	71.9%	34,872	24,158	69.3%	33,556	28,529	85.0%
2021	56,169	46,912	83.5%	18,142	14,539	80.1%	19,717	16,212	82.2%
2020	86,448	63,637	73.6%	29,172	22,058	75.6%	14,631	11,796	80.6%
2019	177,372	66,572	37.5%	45,086	22,299	49.5%	30,571	18,070	59.1%

□ 담당부서 : 총무부 회계팀 (☎440-5186)

4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 정상화 기여

□ 건설공사 발주 적극 추진

- 2022년 1월 착공을 위해 2021. 7월 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을 검토한 바, 공사 발주를 위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착공시기가 불투명하였음.
- 그동안 투입된 자본,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의지로 추진 방향 수립(2-Track, 인·허가 및 공사발주 병행 추진)
 - 2022. 1월: 실시계획인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2. 2월: 공사착공

□ 행정절차 이행 및 대외협의를 시 적극적·총력을 기울임

- 공사발주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역공정 수립 및 관련부서 협업 시행
 - 약 2개월 만에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1.11월 조달청 공사 계약 의뢰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당초 6개월 이상 → 변경 4개월)
- 2022년 1월 중구지역 민·관 상생협약 체결 시기에 맞춰 모든 대·내외 행정절차 이행 완료

□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정상추진

- 공사 착공 후에도 오랜시간 풀지 못한 민·관의 갈등은 여전히 잔존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 이해와 설득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 현 공정을 12.9%로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였으며,
- 송림푸르지오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동측 출구도로 임시개통(2022.12월말, 보도 B=2m, 1개 차로 B=3m, L=195m), 2025년말 12월 전구간 개통을 위한 구간별 추진계획 수립 등 전구간 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담당부서 : 토목부 도로1팀 (☎440-5202)

□ 우회고가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인천 중구 항동1가~동구 만석동 3-1일원(인중로)
- 내 용: 고가교 철거[연장 1,276m / 왕복 4~6차로]
하부도로 정비[연장 1,690m / 왕복 6차로]
- 공사기간: 2022. 1. 28. ~ 2023. 9. 26.
- 도 급 액: 34,136백만원(토목부분)
- 도 급 사: (주)우석건설/성강종합건설(주)/서림종합건설(주)
- 입찰방법: 일반 제한 경쟁/종합평가방식

□ 원도급사(우석건설) 부도

- 부도 관련 추진 일정
 - 2022. 9. 27.: 공동도급이행업체 대책 회의
 - 2022. 9. 29.: 부도 징후 확인
 - 2022. 9. 30: 우석건설 전 직원 일관 퇴사(현장 포함)[공사 중지]
 - 2022. 9. 30.: 발주처 합동 회의
 - ※ 참석: 건설사업관리단/공동이행업체 대표/현장 소장
 - 2022.10. 6.: 부도 및 공동구성원(우석건설) 탈퇴 통보

□ 시공사 부도 신속 대처

- 공동도급사 지분 승계 절차 신속 이행
- 공동도급사와 하수급업체 잔여공사(공사 재개) 협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탈퇴 및 변경 계약 체결(2022.10.17.)

□ 기대효과

- 일반적인 주관 건설사 부도시 공동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관계 문제로 공사재개 최소 5개월이상 필요
- 부도 징후 발생 후 20일 이내 구성원 조정(중도탈퇴)과 하수급업체의 적극적인 공사 참여로 공기지연 최소화
- 고가교 철거 지연시 발생할수 있는 사회간접비(교통 혼잡 및 민원)를 최소화 함

□ 담당부서 : 토목부 도로3팀 (☎440-5222)

6

공사 시 교통혼잡 적극 개선

□ 우회고가교 철거 방법 개선 필요

- 당초철거 방법: 가설벤더와 550톤 크레인(크롤러 및 하이드로) 사용으로 공사 구간 왕복2차로 확보 가능으로 교통안전심의(1차) 보류 판정 [교통처리방안 개선 필요]
- 교통소통대책 주민 설명회(2021.12.16.)시 교통처리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요청(주민 · 지역 상인 · 화물연대 · 경찰서)

□ 철거방법 개선

- 철거 방법 변경

구 분	원설계(당초)	개선(안)
공 법	BENT + C/C 550Ton 공법	Strand Jack + SPMT 공법
개요도		
공법 적용 사유	- 크레인 작업 공간 확보에 따라 왕복 2차로 확보 불가능(대형C/C 550Ton 이동으로 철도부지, 교차로, 하부도로 파손 및 다수의 민원 발생 예상)	- Strand Jack Down 작업으로 하부 도로 간섭 최소화 가능 (3~4차선 확보, 시간당 8~12m 작업시간 단축, 컨트롤 프로그램 설정으로 위험도 최소화)
개선 효과	- 크레인 작업 최소화, 왕복 3~4차선 확보 가능으로 교통 민원 최소화, 컨트롤 프로그램에 의한 정밀시공, 시공방법 간소화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	

※ 교통안전심의 가결 통보(2022. 4. 5.)

○ 기대 효과

- 철거 작업의 정밀, 단순화 및 위험(전도) 요소 제거
- 하부 공간 왕복 4차로 이상 확보함으로써 교통혼잡 해결
- 가설벤트 없이 본선교량 철거하고 거더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 동시 철거로 공기 단축 가능

□ 담당부서 : 토목부 도로3팀 (☎440-5222)

□ 추진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제11항 및 제97조제12항(설계변경 관리)
 - 발주청은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해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운영해야 함
- ⇒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및 군·구 운영사례 없음

□ 업무수행 절차



□ 운영방안

- 구성요건 : 공사금액 조정(증액) 금액 5,000만 원 이상
- 검토위원 : 본부 소속 6급 이상 기술직 또는 기술사(민간전문가 포함)
- 검토인원 : 4명 내외(가급적 해당 공사 담당 팀 인원 제외)
- 운영방법 : 담당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실정보고 내용 청취 후 검토의견 제출 및 보완조치
- 운영시기 : 2022. 9. 13. 이후 실정보고 접수 건부터 ⇒ 인천시 최초

□ 운영실적

일시	공사명	검토사항	검토위원	비고
22.09.19.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추가 연약지반 및 종단선형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내부 5인	
22.09.30.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지반보강차수공법 시험시공에 따른 실정보고	내부 3인, 외부 1인	
22.11.29.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선형변경설계 및 현지여건 반영 실정보고	내부 4인	
22.12.08.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	시설물 설치계획 변경 등 실정보고	내부 3인	
22.12.19.	우회고가 정비사업	RC슬래브 중앙 및 T형교각 가설벤트 실정보고	내부 4인	
23.01.06.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공 공종 추가 실정보고	내부 4인	
23.01.10.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반영 실정보고	내부 3인	
23.01.13.	송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가시설 규격변경 및 배수시설 등 실정보고	내부 3인	
23.03.15.	우회고가 정비사업	본선 강재교각 기둥하부 가우징 절단 및 파쇄 실정보고	내부 4인	

□ 담당부서 : 토목부 도로1팀 (☎440-5201)

□ 추진배경 및 목적

-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 문학야구장 그라운드의 전면 교체를 통한 경기장 환경개선으로 선수단의 훈련 여건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
- 경기장 문제 개선요청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잦아 2023시즌 개막일(2023.4.1.) 전 조치 필요



호우시 배수문제 상황



잔디 훼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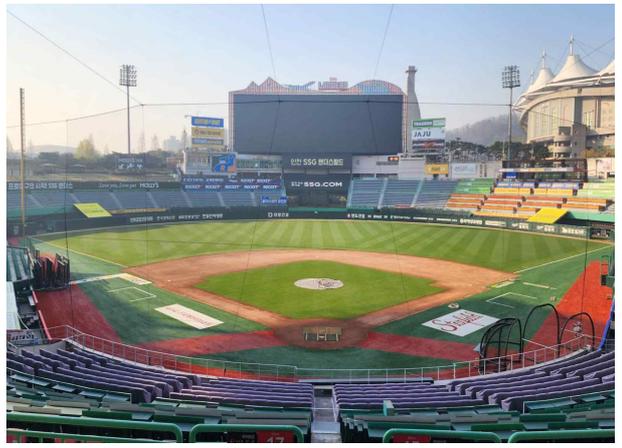
□ 공사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SSG랜더스필드)
- 면 적: 약12,155㎡
- 사 업 비: 1,702백만원
- 사업내용
 - 야구장 천연잔디 전면 교체 및 배수 불량구간 하부 식생토 교체
 - 야구장 외야 인조잔디(배수판) 교체 및 신규 구간 추가 설치
 - 워닝트랙 정비 및 구배조정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 부대공사
- 사업기간: 2022. 11. ~ 2023. 4.

□ 사업성과

-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한 2023시즌 개막일(2023.4.1.) 전 공사 완료
- 공사 중 지속적인 현장협의 및 의견조율을 통한 SSG구단 의견 반영
- 개막 및 우천 기간 구장 상태 관련 긍정적 보도

□ 현황사진



공사 완료 후 현장

야구
"내외야 흠까지 산뜻하게" 챔피언 위한 인천시의 통큰 선물...문학
구장, 21년만에 새단장 마쳤다 [잠실현장]

기사입력 2023-03-28 20:51:04



광속 배수→이제 '갯벌' 아니네...랜더스필드가 달라졌어
요 [SS현장속으로]

입력 2023-04-06 06:53:00 수정 2023-04-06 21:48:08



관련 보도

□ 담당부서 : 건축부 조경팀 (☎440-5273)

□ 추진배경

- 공사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을 겪는 신규자 및 전입자의 업무 능력 향상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여 진행되는 전기공사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제작·사용으로 담당자 능력 향상 및 행정 동일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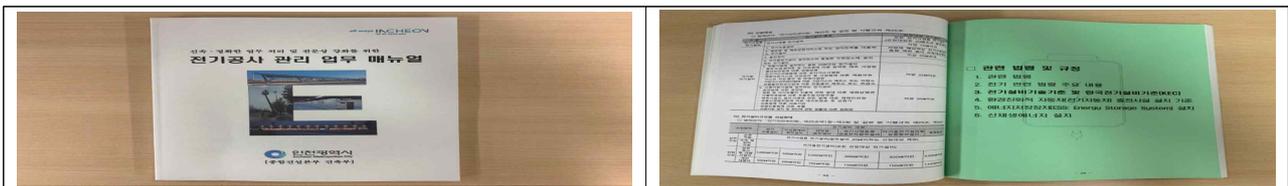
□ 수범내용

- 매뉴얼명: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기공사 관리 업무 매뉴얼
- 매뉴얼 주요 내용
 - 업무 추진 절차 및 유관 기관 협의 방안
 - 각종 법령 및 규정 안내
 -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내용 해설 등
- 추진 경과
 - 2022. 9.: 「전기공사 관리 매뉴얼」 수립
 - 2022. 12.: 군·구 의견 수렴
 - 2023. 2.: 매뉴얼 발간 및 배부(시 사업부서 및 군·구 배부)
- 향후 추진계획
 - 2023. 4.: 사업부서 및 군·구 전기공사 담당자 업무 연찬
 - 2023. 5.~12.: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갱신·제작
 - 2024. ~: 지속적인 매뉴얼 갱신 및 실무 현장 적용

□ 기대 효과

- 공사부서에 처음 발령받은 신규자·전입자도 쉽게 전기공사 관리 가능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속·정확하고 동일한 업무 처리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전기공사 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 관련 사진



□ 담당부서: 건축부 전기팀 (☎440-5301)

□ 현 황

- 추진기간: '22.11.15.~'23. 3.15.(4개월)
- 대상도로: 194개 노선 L=561.5km 중 본부관리 8개 노선 55.8km (9.9%)
- 제설자재: 제설제 확보량 총 4,352톤(염화칼슘 4,180톤, 친환경제설제 172톤)
- 인력·장비: 총58명, 제설장비 5종58대(임대 덤프8대)
 - 차량2대, 살포기36대, 제설기17대, 굴착기2대, 셀프크레인1대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추진사항

- 제설투입 횟수 및 인력: 총15회, 375명
- 투입 제설장비: 143대, 제설차량(덤프) 130대, 포크레인 13대
- 제설자재 확보량 및 사용량
 - 확보량 4,352톤, 사용량 3,369톤(잔량983톤)
- 제설자재 군구지원: 2,772톤

□ 수범내용

- 시민건강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제설작업 실시
 - 고상제설제 비치: 38톤, 친환경액상조합 작업: 25톤
- 제설작업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신속제설을 위한 소통방 운영
 - 안전교육 실시 : 2회(22.11.15, 22.9.29)
 - 단체소통방 운영 : 총15회
- 제설장비교체 및 충분한 자재확보
 - 노후제설기 교체: 4대
 - 염화칼슘 구입: 3,194톤
 - 제설자재 현장점검 및 기습폭설 준비체계 점검(2023.2.15.)
- 대설, 한파폭설대응 역량강화 훈련참가: 22.10.27

□ 추진배경

- 노후된 공용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시, 전체 보유 차량에 대한 교체순위 선정 등 중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 없이 물품의 내용연수 초과여부 및 주행거리 데이터만을 참고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범내용

- 보유 차량에 대한 RAW 데이터(일일 유류 사용량 및 가동률 등) 기록 관리 및 월 1회 분석 결과 보고
 - 차량별 유류 주입량 대비 사용량, 주행거리, 운행시간 등의 RAW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평균 주행거리, 시간당 유류소모량, 리터당 주행거리 산출
 - 연간 표준가동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 등의 RAW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및 연간가동률 산출(가동률이 부진한 차량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원인 파악 가능)
- 분석 결과는 공용차량의 교체순위 선정 등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임. [도로관리부-1518(2023. 1. 20.)호]

□ 기대효과

- 차량별 연비, 가동률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실시간 추이 변화 확인을 통해 항상 최적의 성능유지 도모
- 노후 공용차량의 적기 교체 및 불용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최소화

□ 관련사진(붙임 참조)

□ 담당부서 : 도로관리부 도로운영팀 (☎440-5331)

2023년 3월 유류 및 가동률 보고

우리 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용차량 및 건설기계의 가동률과
경유 및 휘발유 구입·지급량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가동률 현황

구분	당월	전년동월	연평균
계	58.3%	53.6%	13.9%
건설기계	7.5%	5.1%	2.4%
공용차량	65.1%	61.0%	15.4%

□ 유류현황

구분	이월량	전년동월	구입량	전년동월	지급량	전년동월	잔량	전년동월
경유	8,655ℓ	12,563ℓ	5,000ℓ	0ℓ	4,391ℓ	3,131ℓ	9,264ℓ	9,432ℓ
휘발유	0ℓ	0ℓ	37ℓ	67ℓ	37ℓ	67ℓ	0ℓ	0ℓ
등유	-	-	-	-	-	-	-	-

□ 유류저장고 일일현황

날짜	주유량	구입량	경유잔량
3월 01일	749ℓ		7,906ℓ
3월 02일	102ℓ		7,804ℓ
3월 03일	116ℓ		7,688ℓ
3월 04일	0ℓ		7,688ℓ
3월 05일	0ℓ		7,688ℓ
3월 06일	259ℓ		7,429ℓ
3월 07일	51ℓ		7,378ℓ
3월 08일	49ℓ		7,329ℓ
3월 09일	230ℓ		7,099ℓ
3월 10일	297ℓ		6,802ℓ
3월 11일	0ℓ		6,802ℓ
3월 12일	0ℓ		6,802ℓ
3월 13일	191ℓ		6,611ℓ
3월 14일	47ℓ		6,564ℓ
3월 15일	266ℓ		6,298ℓ
3월 16일	55ℓ		6,243ℓ
3월 17일	220ℓ		6,023ℓ
3월 18일	0ℓ		6,023ℓ
3월 19일	0ℓ		6,023ℓ
3월 20일	248ℓ		5,775ℓ
3월 21일	97ℓ		5,678ℓ
3월 22일	102ℓ		5,576ℓ
3월 23일	47ℓ		5,529ℓ
3월 24일	171ℓ		5,358ℓ
3월 25일	0ℓ		5,358ℓ
3월 26일	0ℓ		5,358ℓ
3월 27일	489ℓ		4,869ℓ
3월 28일	0ℓ	5,000ℓ	9,869ℓ
3월 29일	183ℓ		9,686ℓ
3월 30일	254ℓ		9,432ℓ
3월 31일	168ℓ		9,264ℓ

□ 연도(월)별 유류 구입 및 지급 현황

연도	경				유				휘			
	이월량	구입량	액지급량	잔량	이월량	구입량	액지급량	잔량	이월량	구입량	액지급량	잔량
2007년	21,310ℓ	60,000ℓ	₩71,660,000	64,342ℓ	16,968ℓ	0ℓ	3,917ℓ	₩5,554,130	3,917ℓ	0ℓ		
2008년	16,968ℓ	51,000ℓ	₩78,726,000	52,020ℓ	15,948ℓ	0ℓ	3,423ℓ	₩6,144,250	3,423ℓ	0ℓ		
2009년	15,948ℓ	72,000ℓ	₩90,498,000	84,018ℓ	3,930ℓ	0ℓ	3,805ℓ	₩5,883,470	3,805ℓ	0ℓ		
2010년	3,930ℓ	73,000ℓ	₩81,436,000	74,234ℓ	2,696ℓ	0ℓ	3,340ℓ	₩5,674,890	3,340ℓ	0ℓ		
2011년	2,696ℓ	56,000ℓ	₩96,571,000	54,126ℓ	4,570ℓ	0ℓ	3,293ℓ	₩6,317,530	3,293ℓ	0ℓ		
2012년	4,570ℓ	65,000ℓ	₩111,698,000	61,844ℓ	7,726ℓ	0ℓ	3,274ℓ	₩6,435,810	3,274ℓ	0ℓ		
2013년	7,726ℓ	62,000ℓ	₩103,216,290	60,665ℓ	9,061ℓ	0ℓ	3,188ℓ	₩5,990,013	3,188ℓ	0ℓ		
2014년	9,061ℓ	60,130ℓ	₩91,391,840	60,190ℓ	9,001ℓ	0ℓ	2,103ℓ	₩3,522,190	2,103ℓ	0ℓ		
2015년	9,001ℓ	63,053ℓ	₩77,195,010	56,092ℓ	15,962ℓ	0ℓ	2,775ℓ	₩4,355,214	2,775ℓ	0ℓ		
2016년	15,962ℓ	57,000ℓ	₩63,978,890	64,073ℓ	8,889ℓ	0ℓ	1,474ℓ	₩1,909,050	1,474ℓ	0ℓ		
2017년	8,889ℓ	65,000ℓ	₩77,515,600	67,874ℓ	6,015ℓ	0ℓ	1,102ℓ	₩1,522,255	1,102ℓ	0ℓ		
2018년	6,015ℓ	68,000ℓ	₩87,503,370	66,264ℓ	7,751ℓ	0ℓ	1,431ℓ	₩2,097,670	1,431ℓ	0ℓ		
2019년	6,952ℓ	60,000ℓ	₩73,301,500	60,769ℓ	6,183ℓ	0ℓ	1,463ℓ	₩2,044,530	1,463ℓ	0ℓ		
2020년	6,982ℓ	60,000ℓ	₩67,425,600	59,650ℓ	7,332ℓ	0ℓ	1,008ℓ	₩1,319,630	1,008ℓ	0ℓ		
2021년	7,332ℓ	72,000ℓ	₩92,057,280	74,823ℓ	4,509ℓ	0ℓ	1,131ℓ	₩1,684,640	1,131ℓ	0ℓ		
2022년	4,509ℓ	58,000ℓ	₩97,325,420	61,994ℓ	515ℓ	0ℓ	626ℓ	₩1,060,900	626ℓ	0ℓ		
평균		62,636ℓ	₩85,093,738	63,936ℓ			2,335ℓ	₩3,844,761	2,335ℓ			
2023년	515ℓ	30,000ℓ	₩46,389,300	21,251ℓ	9,264ℓ	0ℓ	160ℓ	₩239,770	160ℓ	0ℓ		
- 1월	515ℓ	20,000ℓ	₩31,894,200	9,376ℓ	11,139ℓ	0ℓ	42ℓ	₩63,140	42ℓ	0ℓ		
- 2월	11,139ℓ	5,000ℓ	₩7,274,250	7,484ℓ	8,655ℓ	0ℓ	81ℓ	₩120,830	81ℓ	0ℓ		
- 3월	8,655ℓ	5,000ℓ	₩7,220,850	4,391ℓ	9,264ℓ	0ℓ	37ℓ	₩55,800	37ℓ	0ℓ		
- 4월	이하 빈칸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구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유류주입량계	유류사용량계	주행거리계	운행시간계	가동일계	연간가동률	일평균주행거리	시간당유류소모	리터당주행거리	
1	굴착기	인천02마9003	146	151	25	73	14	5.8%	1.8	2.1	0.2	
2	굴착기	인천02마9013	61	40	6	9	2	0.7%	3.0	4.4	0.2	
3	도로보수트럭	인천26거9008	0	123	178	17	6	1.4%	29.7	7.2	1.4	
4	덤프트럭15톤	인천06마9007	181	48	125	26	7	2.1%	17.9	1.8	2.6	
5	덤프트럭15톤	인천06마9013	192	75	144	25	7	2.0%	20.6	3.0	1.9	
건설기계소계			580t	437t	478km	150h	36일	2.4%	13.3km	2.9t/h	1.1km/t	
구분	경유차량명	등록번호	유류주입량계	유류사용량계	주행거리계	운행시간계	가동일계	연간가동률	일평균주행거리	시간당유류소모	리터당주행거리	
1	그랜드스타렉스	83보8644	866	809	5,963	469	66	23.5%	90.3	1.7	7.4	
2	스타리아	985다3681	439	442	3,377	335	49	16.8%	68.9	1.3	7.6	
4	스타리아	840우5397	544	549	3,905	465	64	23.3%	61.0	1.2	7.1	
5	그랜드스타렉스	72다2252	675	727	4,727	457	63	22.9%	75.0	1.6	6.5	
3	그랜드스타렉스	83보8645	541	535	3,622	351	48	17.6%	75.5	1.5	6.8	
6	셀프크레인	86서9311	572	467	517	74	16	8.3%	32.3	6.3	1.1	
7	이-카운티	73보9201	64	92	251	41	12	2.1%	20.9	2.2	2.7	
8	윈스톤	38저7321	267	218	1,651	165	44	8.3%	37.5	1.3	7.6	
9	윈스톤	64더2900	280	237	1,886	191	52	9.6%	36.3	1.2	8.0	
10	포터II	83저3830	151	178	1,180	100	29	5.0%	40.7	1.8	6.6	
11	포터II	81루2766	561	561	4,180	284	57	14.2%	73.3	2.0	7.5	
12	포터II	81루9449	433	450	3,327	259	50	13.0%	66.5	1.7	7.4	
13	포터II	91마0634	462	440	4,028	456	60	22.8%	67.1	1.0	9.2	
14	포터II	91마0635	508	497	4,154	568	71	28.4%	58.5	0.9	8.4	
15	포터II	94서0743	702	700	4,652	452	78	22.6%	59.6	1.5	6.6	
16	포터II	84서0753	301	247	1,815	184	47	9.2%	38.6	1.3	7.3	
17	포터II	83나2351	542	539	3,470	306	60	15.3%	57.8	1.8	6.4	
18	포터II	83나2360	493	489	3,060	300	60	15.0%	51.0	1.6	6.3	
19	포터II	83나2361	608	613	4,267	362	68	18.1%	62.8	1.7	7.0	
20	동해고소작업차	98노9912	662	668	4,716	515	75	25.8%	62.9	1.3	7.1	
21	코란도스포츠	89보5653	214	219	1,681	143	37	7.2%	45.4	1.5	7.7	
22	그랜드스타렉스	89서0907	339	382	2,590	453	66	22.7%	39.2	0.8	6.8	
23	스타리아	812더7410	119	107	913	87	18	4.4%	50.7	1.2	8.5	
경유차량소계			10,343t	10,166t	69,932km	7,017h	1,190일	15.6%	58.8km	1.4t/h	6.9km/t	
경유차량·건설기계합계			10,923t	10,603t	70,410km	7,167h	1,226일	14.0%	57.4km	1.5t/h	6.6km/t	
구분	휘발유차량명	등록번호	유류주입량계	유류사용량계	주행거리계	운행시간계	가동일계	연간가동률	일평균주행거리	시간당유류소모	리터당주행거리	
1	토스카	62무6520	160	182	1,061	206	53	10.3%	20.0	0.9	5.8	
내연차량소계			10,503t	10,348t	70,993km	7,223h	1,243일	15.4%	57.1km	1.4t/h	6.9km/t	
내연차량·건설기계합계			11,083t	10,785t	71,471km	7,373h	1,279일	13.9%	55.9km	1.5t/h	6.6km/t	

□ 2023년도 공용차량 대체구입계획

※ 공용차량 대체구입계획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용차량 교체순위 선정(2023. 1. 1. 기준)

(단위: 천 원, km)

교체대상명 (등록번호)	등록일 (구입금액)	교체순위 선정내역						환산 점수	교체순위 (교체시기)
		①차령 (내용연수 초과)	②2022년 연간 가동률	③주행 거리	④누적 수리비	⑤경제적 수리한계			
그랜드스타렉스 (72다2252)	2011. 2. 7. (23,763)	12년 (4년 초과)	106.0%	267,138	28,731	-1,188	82	1순위 (2023년)	
윈스톤 (38저7321)	2008. 5. 22. (28,570)	15년 (7년 초과)	68.8%	182,297	24,066	-6,785	79	2순위 (2024년)	
윈스톤 (64더2900)	2009. 1. 29. (28,820)	14년 (6년 초과)	88.8%	134,398	15,676	-5,043	76	3순위 (2024년)	
토스카 (62무6520)	2009. 2. 9. (23,560)	14년 (6년 초과)	90.8%	119,835	13,788	-4,123	75	4순위 (2023년)	
포터II 더블캡 (83저3830)	2012. 4. 24. (17,210)	11년 (4년 초과)	56.0%	309,203	17,332	-1,475	68	5순위 (2023년)	
셀프크레인 (86서9311)	2005. 8. 2. (157,971)	18년 (8년 초과)	14.0%	37,120	53,252	-31,594	65	6순위 (2024년10월)	
이-카운티 (73보9201)	2008. 8. 26. (70,930)	15년 (6년 초과)	36.0%	64,793	12,300	-9,457	64	7순위 (2024년)	
포터II 더블캡 (81루2766)	2013. 7. 1. (17,050)	10년 (1년 초과)	76.4%	152,053	13,472	2,462	63	8순위 (2023년)	

※ 교체순위 선정 시, 환산점수 산출근거 * 내용연수 미도래는 교체순위 제외

- 분야별 환산비율: ①차령(내용연수 초과) 50% + ②2022년 연간 가동률 20% + ③주행거리 15% + ④누적 수리비 10% + ⑤경제적 수리한계 5% = 100%
- 산출산식: 100 - [(①차령 순위/전체대수×환산비율) + (②2022년 연간 가동률 순위/전체대수×환산비율) + (③주행거리 순위/전체대수×환산비율) + (④누적 수리비 순위/전체대수×환산비율) + (⑤경제적 수리한계 순위/전체대수×환산비율)]×100